

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인사위원회 규정

제정 1997. 10. 22.

개정 2002. 2. 15.

2003. 9. 24.

2005. 9. 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41조 제7항 및 서울대학교 규칙 제 924호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“농업생명과학대학 인사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학장, 교무부학장, 학생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각 학부(학사과정 조직)에서 전임교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교수 1명씩 추천을 받아 교수회의 심의 후 학장이 임명한다.

② 위원장은 학장, 부위원장은 교무부학장으로 한다.

제3조(위원장 등)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,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심의사항) ① 위원회는 농업생명과학대학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전임교원의 신규임용, 승진임용, 재계약임용, 정년보장임용 추천
2. 명예교수 추대 추천
3. 객원교수, 초빙강사 및 저명강사의 위촉 추천
4. 연구교수, 해외연수 및 파견근무 추천
5. 교수채용 분야 추천
6. 조교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 추천
7.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

② 전①항1호 내지 4호의 심의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

1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
2. 학생의 교육 및 지도에 관한 능력과 실적
3.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
4.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

③ 전①항5호의 심의에 있어서는 학부(과) 및 대학의 교육목표와의 부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록은 교무부학장이 작성하며,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
제6조(보고) 학장은 위원회의 심사경위와 그 결과를 별도 서식에 따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종전의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(준칙)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(준칙)에 의한 위원의 수는 이 규정에 의거 승인된 것으로 보며, 기존의 인사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거 구성된 것으로 간주한다.

부칙(제4호, 1997.10.22.)

① 이 규정은 1997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종전의 농업생명과학대학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.

부칙(제41호, 2002.2.15.)

이 규정은 200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51호, 2003.9.24.)

① 이 규정은 200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인사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을 선출한다.

부칙(제68호, 2005.9.2.)

① 이 규정은 200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종전의 농업생명과학대학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.